

유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고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이 제정된 1970년 1월 이후 그동안 수차례 부분적인 개정, 보완작업이 있었으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나 기본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간 우리의 경제발전 규모나 석유산업의 능력, 심화되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석유사업법만 25년간 존속하고 있음에 비하여 석유이외의 산업분야에는 1986년 1월 공업발전법의 제정과 동시에 기계, 조선, 전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및 섬유산업관련법들이 모두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민간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경쟁의 여건이 10년전에 이미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맞이하여 단기적인 수급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함으로써, 이를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나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석유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국내 석유산업은, 80년대 중반이후 계속된 3저의 好機 마저 공정한 Rule of Game에 의한 국내외 시장경쟁 경험 축적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단순히 기존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이를 증대하기 위한 설비증설에 치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한정된 국내시장을 둘러싼 잔극히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쟁에 인적, 물적자원을 낭비하고, 정부는 정유사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시장경쟁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소비자

석유산업 규제완화에 부쳐



후容奉
(현대정유 기획부장)

의 혜택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쟁의 비효율성과 낭비의 패러다임이 국내 석유산업에는 예외적으로 통용되는 奇現狀을 낳고 말았다.

이러한 역 패러다임은 결국 규제완화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주유소 상표표시제(Pole Sign)를 일종

의 법률로 시행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국내 석유사업법은 1차 석유 위기 이후 1975년 1차 개정되었다. 이후 두차례의 법개정과 12차례의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나, 석유산업의 보호 육성을 명목으로 한 정부의 통제, 조정 능력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으며, 석유산업보다도 규모나 기술 및 경험측면에서 취약했던 기계, 조선, 전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섬유공업등이 1985년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자율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석유산업은 정부의 통제, 조정을 위하여 일종의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석유 시장이 Buyer's Market으로 전환된 지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석유를 아직도 전략자원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행히 정부와 석유업계는 개방화, 자유화 및 국제화에 대응하여 석유산업의 규제완화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유가자유화 실시, 석유정제업의 허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정제시설 설치허가제도의 완화, 간이정제 설치 허가제도 완화, 석유이동 판매소 영업 확대, 부산물 판매업허가, 석유대리점 허가제도 완화, 석유 수출입신고제도의 완화 및 폐지,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 폐지, 주유소 Pole Sign 제도 폐지, 정유사-주유소간 직거래 허용등의 문제로 요약되며, 이러한 모든 내용을 기존 석유사업법의 틀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기존석유 사업법을 폐기, 공업발전법으로 통합하는 문제와 함께 논의할 때 우리는 석유산업의 제반 근본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2-1호에 의거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하면서 주유소의 상표표시제(Pole Sign)제도를 '92. 4.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거나 광고함으로써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를 규제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차별화와 그 식별이 지극히 곤란하고, 일정 규격에 따라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일어나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는 이미 근거리 수송의 원칙에 따라 각 정유사간 제품 교환을 20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또한 그간 관행으로 용인되어 온 주유소의 복수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사태가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가정하여 이를 법률화 함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조치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Pole Sign은 단순한 상표광고이며, 주유소 상표표시제도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간 私的契約 행위로서 법률적 규제대상이 아니다. 美國, 日本, 英國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는 상표사용계약이나 商慣行으로 확립하고 있는 제도이지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서만 Pole Sign제도와 상표표시제도를 묶어 이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음은, 국내 석유시장을 기존 구조대로 안정화하고, 수직계열화에 의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유사 직영대리점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자영대리점의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Rule of Game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조치가 불공정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아이러니를 또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류 유통단계에서 도매상으로서의 대리점이 보다 경쟁적인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 제공할 수 있도록 대리점이 異種 Pole Sign주유소를 보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어야 하며, 정유사-주유소간 직거래가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거나 정유사-주유소간 契約에 따라 거래가 성립된 경우 이를 商慣行으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주유소선택과 이용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품질경쟁여건의 취약한 석유산업에서 품질보다는 서비스와 가격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만족을 통하여 정유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주유소 설립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93년 11월 주유소의 경영 다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하고 있는 최소면적 기준은 궁극적으로 간이주유소 설치를 제약하고, 공급이 한정된 토지의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地價의 상승과 주유소 투자비의 상승을 유도하여 정유사 및 주유소 자금 부담을 가중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나 정유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기준이 국내의 조사사례를 보더라도 주유소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주유소의 설치, 운용을 저해하는 현행 허가제도나 허가기준은 완화하여야 한다. '85~'93년간 자동차 보유대수가 5.6배 증가한 반면 이 기간 주유소의 공급이 2.6배에 그침으로써 신설 주유소의 영업권이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주유소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의 문제는 주유소의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여러 형태의 주유소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자동차 증가율을 10~15%로 가정할 경우 2000년까지 약 10,000~15,000개의 주유소가 필요하며, 이는 대도시에는 소형주유소 건설을, 외곽에는 다용도의 대형주유소 건설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이를 위한 법률적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석유산업의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쟁 원리를 제공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한 선의의 경쟁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석유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